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위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857

발의연월일: 2024. 8. 14.

발 의 자:김위상・김선교・김소희

구자근 · 김승수 · 신동욱

김형동 • 이달희 • 임이자

최은석 • 주진우 • 이종배

이인선 • 박정하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제도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한 충전시설과 전 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규정을 갖추고 있음.

그런데,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만 치중한 나머지,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에 필요한 화재 안전 사항은 전무한 실정임. 특히, 지하주차장 등 실내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자동차 화재는 진화가 힘들어 주변으로 불길이 번져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음.

이에, 새로 설치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 대하여는 방화 셔터를 포함한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도록 하여, 전기자동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49조제6항).

법률 제 호
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1 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이 설치 된 시설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방화구획 등에 관한 적용례) 제4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(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의2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9조(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	제49조(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
도제한 등) ① ~ ⑤ (생 략)	도제한 등) ① ~ ⑤ (현행과
	같음)
<u><신 설></u>	⑥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
	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
	률」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
	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
	주차구역이 설치된 시설에 대
	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
	는 바에 따라 방화구획 등 화
	재 안전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
	하여야 한다.